

최근의 개정된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설명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김현일 과장

1.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개선의 배경

전기용품은 현대사회의 필수요소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문명의 이기임에 틀림없지만 제품의 특성상 최선의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지 않으면 화재, 감전, 누전, 전자파장해 등의 사고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는 초창기 전기사업법을 모태로 한 “전기용품 제조면허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으로 운영하였으나, 전기적인 상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불법·불량 전기용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화재·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안전관리는 1974년 1월 4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주요 골자는 전기용품을 제조,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제조설비 및 검사시설을 갖춘 후 관할 시·도에 제조업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전기용품은 그 제품의 형식구분별로 형식승인을 득한 후에 계속적으로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세계화와 자율화라는 시대조류의 변화와 국제 무역시장의 변화, 관리대상품목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9년에 1차 개정되었으며, 1999년에는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 또는 신고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정부가 수행하던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를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로 바꾸어 기술표준원의 지도·감독하에 민간기관에서 안전인증을 수행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9. 9. 7자로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기술표준원장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 보급
- 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지도·감독
-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 공장검사 및 제품시험을 거쳐 안전인증마크 부여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자체검사규정을 정하고 자체검사를 실시
-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공장단위로 년 1회이상 정기검사 실시
- 관할 시·도지사는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행정 조치 및 리콜명령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대한 파기 또는 수거명령
 - 안전기준에 미달되거나 표시사항 위반제품에 대한 개선명령
 -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공표·교환·수리·환불 등 리콜명령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규에서는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검사설비와 기술능력 등을 갖춘 때에 안전인증을 행하도록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유보함으로써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가급적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현재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자파연구원(중전의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등 3개 기관이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이를 기관을 통해 2003년 12월말 현재 7,158업체에서 26,423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받았으며 그 중 52%가 국내업체이고 48%가 외국업체이다.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여 인증기관의 자율성을 확

대하고 제조업체의 보다 자율적인 제품검사를 통해 불량 전기용품의 제조·유통을 줄여보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안전인증제도를 시행한지 3년 반이 지난 현실은 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기술표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판품조사 결과를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용품의 불량률이 2000년도에 2배 이상 갑자기 급등하여 현재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주요 취약품목의 경우는 소비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불량률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이처럼 불량 제품이 증가하게 된 요인으로 우선 안전인증업무가 민간기관으로 이양되면서 제조업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이완되거나 저하되었고, 안전인증기관도 3개 기관이 경쟁하면서 엄격한 안전인증을 소홀히 하는 한편 정기검사 등 사후관리 시에도 공장검사만하고 제품시험은 하지 않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는지 조차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관련규정에 안전인증여부를 판정하는 세부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인증기관이 제조업자의 공장확인을 위한 판정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적용토록 한 것도 전기용품의 불량률이 높아지게 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인증기관마다 업체에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 어느 한 인증기관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업체는 이에 불응하여 다른 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신청 또는 사후관리를 의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이러한 와중에 안전인증의 엄격도는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업체의 경각심도 더욱

| 교육자료 |

이완되는 악순환이 거듭된 것이다.

따라서 기술표준원은 불량 전기용품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던 세부 기준 또는 절차를 통일시키기로 하였으며, 기술표준원과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담당자들이 수 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통일안을 작성하고, 2003년 11월 6일 기술표준원장이 이를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으로 제정하여, 인증기관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은 인증기관의 안전인증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제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세부기준 또는 절차를 통일하여 공개함으로써 제조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한편, 안전인증제도가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지침의 주요 내용

가. 안전인증신청 및 처리기한

(1) 안전인증 신청

안전인증을 받거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면 법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수료 납부 이전에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외상으로 실시하고 후에 수수료 미납으로 인하여 인증기관과 업체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신청은 제품시험용 시료가 제출되고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이후에 접수토록 하고, 정기검사는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이후에 실시토록 운영지침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품시험용 시료와 수수료가 납부되었더라도 신청서의 구비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되 기한 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도록 하였다.

(2) 안전인증신청 처리기간

안전인증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45일 이내로 정하였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상 제품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시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는 시험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증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안전인증 신청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안전인증신청 처리의 자연사유와 예상처리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하였다.

안전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기관은 신청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확인(공장검사)과 제품시험을 실시한 후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나. 공장 확인

(1) 심사원 자격

안전인증 신청 시 또는 정기검사 시의 공장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의 자격을 ISO 9000 또는 KS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였다.

(2) 제조설비, 자체검사 및 검사설비

안전인증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공장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다.

원자재 가공부터 완제품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갖추어 생산하는 경우, 부품을 구입하여 조립만 하는 경우, 반제품을 외주하여 가공하고 이

들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등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최종 제품이 생산되었다는 것은 그 과정 중에 필요한 제조설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조설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적인 설비기준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완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공장(예: OEM 생산 등)에는 안전인증이 부여되지 않는다.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토록 제조되어야 하므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는 생산된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토록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증기관이 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시 제조업자가 필요한 검사설비와 기술인력을 갖추고 자체검사를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판정기준을 운영지침에 규정하였다. 즉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설비목록과 자체검사에 포함되어야 할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를 규정하였다.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려면 안전기준에 규정된 내용대로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검사설비를 모두 갖추기는 어려우므로 마이크로미터, 내전압시험기 등 매일 사용하거나 사용빈도가 높은 설비들은 필수적으로 구비토록 하되 인장강도시험기, 전자파장해시험 설비, 항온조 등 사용빈도가 낮거나 고가의 시험장비는 주변 업체·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활용하거나 KOLAS 인정 시험기관 등 공인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검사설비를 자체적으로 구비하였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시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체검사는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의 특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안전기준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해 자율적으로 검사주기를 정하여 실시하여 전자파적 합성 검사항목은 년 1회 이상, 검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내구성 검사항목은 반기별 1회 이상, 기타 검사항목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 실적이 있어야 자체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자체검사는 원칙적으로 모델별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여러 모델을 통합하여 검사하더라도 당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될 경우에는 검사로트 및 검사주기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 모델에 동일부품·동일회로로 구성된 전기부품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합성수지 외 함만이 모델별로 다를 경우 전자파장해시험을 포함한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는 여러 모델 전체를 검사로트로 하여 검사하고, 외함에 대해서만 각 모델별로 검사하여야 된다.

또한 인증기관이 정기검사 등을 통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시험이 실시된 당해 모델에 한하여 1회의 자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인증기관이 A모델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전자파적합성시험에 합격되었다면 A모델에 대하여는 같은 해에 전자파적합성 검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3) 유사한 모델에 대한 공장 확인 생략

| 교육자료 |

새로운 기본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였더라도 동일 공장에서 동일 품목에 대해 이미 안전인증을 받았고,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에 사용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만으로 생산 및 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제품시험

(1) 제품시험용 시료

안전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제품시험용 시료는 신청제품 1대, 신청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각 1대, 기타 필요한 재료 또는 부품시험용 시료이다. 그리고 전자파장해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부품 또는 부분품 모두 1대씩의 시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안전기준에 시료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료가 중량이거나 대형이어서 인증기관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공장에 이를 시험할 수 있는 설비가 있거나 인증기관의 시험설비를 공장으로 운반할 수 있으면 현지에 출장하여 제품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품시험에 적합한 시험설비를 당해 공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지에 출장하여 시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품시험의 면제

안전인증 신청 시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IEC/CB Scheme)에 의하여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CB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CB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국내에서 발행된 CB시험성적서를 인정한 실적이 있거나 인정할 것을 문서로 보장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CB시험성적서일 것
- CB시험성적서에 기재된 모델명 및 부품목록과 제출된 시료의 모델명 및 부품목록이 동일할 것
- 시험완료일이 CB시험성적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일 것

그리고 CB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제품시험을 모두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시험항목에 대하여만 시험을 면제한다.

-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부품 또는 부분품에 대하여 당해 안전기준과 동일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한 시험항목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부품 또는 부분품이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한국산업규격(KS)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품 또는 부분품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3) 재시험

안전인증은 인증기관이 제조자도 사용자도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제조자의 공장 및 제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요건에 적합한 경우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은 제조업체 내에서 실시되거나 제조업체의 의뢰를 받아 시험기관에서 실시되는 제품개발시험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품개발시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시제품의 보완 및 변경과 시험을 무한정 반복할 수 있으나 안전인증은 제품 개발 및 양산 준비를

완료한 후 이에 대해 제3자의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은 안전인증 신청 시 제출된 시료에 한하여 시험한 후 인증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하여 시료를 다시 제출토록하거나, 시료의 일부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재시험하여서는 안된다. 인증기관은 자신이 평가하게 될 제품의 개발 또는 성능보완에 참여하여도 안된다.

즉 인증기관은 제출된 시료를 시험하여 그 결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 부적합 내용의 경증을 불문하고 신청자에게 안전인증불가 통보를 함으로써 제3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운용지침에는 이러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공장 확인 결과가 요건에 적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시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품시험 불합격으로 다시 안전인증 신청을 하고 제품시험뿐만 아니라 공장 확인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였다.

그러나 재시험은 전 시험항목에 대해 다시 시험해야 하며 시험수수료도 안전인증 신청 시와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1) 안전기준 변경 통보

안전기준이 제정·개정·폐지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제조업자에게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설명토록 하였다. 회의에 불참한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의 변경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안전인증을 받아 당해 전기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이미 인증된 모델을 그대로 생산하여도 개정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품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파생모델로 안전인증 변경을 하거나 다시 기본모델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해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기검사는 공장검사 및 제품시험, 유통중인 상품의 조사(시판품조사) 등을 통하여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지의 여부,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내용의 준수여부,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의 작성·보관여부 등을 검사하는 것이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정기검사 시에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함으로써 정기검사시에 제품시험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기관에서는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제품시험을 소홀히 함으로써 불량품이 생산·유통되어도 이를 적발하거나 제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유통되는 전기용품의 불량률이 급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지침에 인증기관의 정기검사시에 제품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품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정기검사시의 제품시험은 안전인증을 부여할 때

| 교육자료 |

와 마찬가지로 기본모델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기본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료 제공과 시험수수료를 납부하는 업체의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으므로 모델을 샘플링하여 시험하도록 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현행 법규에는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 스위치, 전기기기류, 조명기기 등 11개 제품군에 총 216개 품목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기검사시에는 216개 품목을 3등분하여 매년 72 품목을 제품시험 대상품목으로 하고 제품시험을 위한 시료는 업체마다 11개 제품군별로 대표적인 제품 1대씩을 발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단일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3년마다 1대의 제품을 시험하게 되고, 216개 품목을 모두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매년 11대의 제품을 시험하게 되며 시험결과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면 당해 공장에 대한 제품시험은 종결된다.

그러나 1차 시험결과가 불합격(1차 부적합)된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불합격된 제품이 해당되는 제품군의 전 품목별로 1모델씩 시료를 채취하여 2차 시험을 실시한다. 이때 업체가 제품시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증기관은 해당 제품군의 전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2차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된 품목에 한하여 제품시험이 종결된다. 그러나 불합격(2차 부적합)된 품목에 대하여는 다시 기본 모델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3차 시험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때 업체가 제품시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인증기관은 해당 품목의 전 모델에 대하여 안전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기청소기(모델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전기다리미(모델 B-1-1, B-1-2, B-1-3, B-2-1, B-2-2, B-2-3, B-3-1, B-3-2,...),

전기탈수기(모델 C-1-1, C-1-2, C-1-3, C-2-1, C-2-2, C-2-3, C-3-1, C-3-2,...),

전기시계(모델 D-1-1, D-1-2, D-1-3, D-2-1, D-2-2, D-2-3, D-3-1, D-3-2,...),

전기냉장고(모델 E-1-1, E-1-2, E-1-3, E-2-1, E-2-2, E-2-3, E-3-1, E-3-2,...)를 생산하는 공장의 경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탈수기는 2003년도, 전기시계와 전기냉장고는 2004년도 제품시험 대상품목임)

< 2003년도의 제품시험 예 >

- 1차 시험 :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탈수기의 모든 모델 중 가장 생산량이 많은 모델인 전기탈수기 C-3-2 1대를 채취하여 시험
- 합격일 경우 : 당해 공장에 대한 제품시험 종결
- 불합격일 경우 : 불합격된 모델 C-3-2가 해당되는 모델군(기본모델+파생모델)의 전모델을 행정조치 대상으로 하고 2차 시험 실시

업체가 1차 시험에 불응 시 인증기관은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탈수기의 모든 모델에 대해 안전인증 취소

- 2차 시험 : 전기청소기 : A-1-3(품목별 대표적 모델)

전기다리미 : B-2-2(품목별 대표적 모델)

전기탈수기 : C-1-2(품목별 대표적 모델)

(모두 합격일 경우 : 1차 시험에 불합격된 모델군에 대하여만 행정조치하고 제품시험 종결)

· 시험결과 A-1-3는 합격, B-2-2, C-1-2이 불합격된 경우

전기청소기 : 제품시험 종결

전기다리미 : 불합격된 모델 B-2-2가 해당되는 모델군의 전모델을 행정조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기본모델별로 다시 시험 실시

전기탈수기 : 1차 시험시 불합격된 모델 C-3-2, 2차 시험시 불합격된 모델 C-1-2이 해당되는 모델군의 전 모델에 대해 행정조치 대상으로 하고 3차 시험실시

업체가 2차 시험에 모두 불응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탈수기의 모든 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일부 불응할 경우에는 불응한 범위에 해당하는 모델에 대해 안전인증을 취소

- 3차 시험 : 전기다리미중 B-2-2에 해당되는 모델을 제외한 전 모델군별(B-1-2, B-3-3, B-4-2, ...)로 대표적 모델과 전기탈수기중 C-1-2 및 C-3-2에 해당되는 모델을 제외한 전 모델군별(C-1-1, C-1-3, C-2-1, C-2-2, C-2-3, C-3-1, ...)로 전 모델별로 대표적 모델에 대해 시험 실시

· B-1-2, B-3-3, C-1-2, C-3-2이 불합격된 경우 : 불합격된 모델이 해당되는 모델군의 전 모델에 대하여 행정조치

이 공장의 경우, 인증기관은 3차 시험까지 실시하

여 전기다리미 B-1-2, B-2-2, B-3-3, 전기탈수기 C-2-1, C-3-2이 해당되는 모델군(기본모델+파생모델)의 전 모델에 대하여 개선권고 또는 안전인증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소량의 제품이 생산되거나 수입되고 소비자가격 또는 수입가격이 1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고가의 제품으로서 제품시험 시 제조업자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기술표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확인방법(예 : 현지 출장 시험 또는 현지 확인 등)을 적용함으로써 제품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시판품 조사

시판품조사는 기술표준원, 소비자보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시중 유통상품의 품질조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 시·도에서 불법·불량제품 단속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정기검사의 일환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실시된다.

인증기관은 유통중인 전기용품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증기관이 시판품조사를 통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시료구입비용과 시험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때 제조업자가 시료구입비용과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정기검사 결과의 처분

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부적합사항의 경중에 따라 인증기관이 제조업자에 대하여 조치해야 할 처분기준을 운영지침에 규정하였다.

| 교육자료 |

부적합 사항이 중결함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토록 하였고, 경결함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에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부여하여 개선을 권고토록 하였다.

그러나 경결함에 해당되더라도 제조업자가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하지 않거나 동일 제품군 내의 제품에 대하여 2회 이상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기관이 개선권고 또는 안전인증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실과 부적합 사항을 명기하여 기술표준원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요령」중 제조업체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요령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

3. 설명을 마치며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요령을 제정, 발표한 이후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업체로부터 항의가 있었다. “제품시험 비용이 너무 비싸다.” “검사설비를 갖추어 자체검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외부 검사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 영세업체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운용요령에 규정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우리같은 영세업체는 죽으란 말이냐”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설명한 바와 같이 운용요령은 업체의 부담을 가급적 줄이면서 전기용품의 기본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한 것이다.

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하여 국제기준인 IEC규격과 일치시켰다. 국제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제정한 국제규격을 안전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WTO/TBT협정에 맞추어 국산제품의 수출을 촉진시키고, 국산 제품이 선진국 제품과 맞설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제규격과 일치시킨 안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제품시험항목이 많아졌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높아졌다. 그러나 현재 인증기관에서 받는 시험수수료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주변국가인 일본, 대만, 중국의 시험기관들이 받는 시험수수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체가 자체검사를 통해 불량제품을 가려내고 적합한 제품만을 유통시키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책임져야 할 제조업체의 당연한 도리이며, 기업 경영의 어려움, 기업의 영세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전기용품안전인증운용요령은 기술표준원과 인증기관의 담당자들이 고심을 거듭하여 제정하였지만 현재의 제도가 전기용품안전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하지는 않는다.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할 것이다. 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서슴없이 기술표준원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이만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한다.